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70078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1] 민법 제105조, 제428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7007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1. 9. 20 선고 2000나11834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상고인】 기BABA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CA)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1. 9. 20. 선고 2000나11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7. 9. 2. 소외 조DA과 사이에 피고 발행의 한도액 1억 2,000만 원의 신용보증서(이하 '1차 보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상업어음할인 회전한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조DA에게 액면 합계 96,320,879원의 어음 4매를 할인해 주었는데, 같은 해 12. 12. 및 같은 달 15. 위 어음들이 부도처리된 사실, 다시 원고는 1998. 1. 15. 소외 조DA과 사이에 피고 발행의 한도액 7,500만 원의 신용보증서(이하 '2차 보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일반자금대출 개별한도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위 조DA에게 추가로 7,5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2차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본 보증서는 1차 보증서에 의해 할인된 어음 4매를 모두 회수하는 조건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금에 의해 위 할인어음이 회수되면 회수일 이후부터 1차 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은 2,600만 원 한도로 부담함'이라는 특약사항을 명기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대출금으로 위 할인어음 중 3매의 어음에 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처리하였지만 나머지 어음에 관하여는 그 일부인 8,000,000원만을 상환시키고 결국 위 할인어음의 잔액으로는 23,205,750원이 남게 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특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차 보증은 보증한도액이 2,600만 원으로 감축되었고, 2차 보증의 보증한도액은 7,500만 원으로 정하여졌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 보증책임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원고가 위 특약에 위배하여 위 할인어음 전액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등에서 정한 면책사유와 면책기준에 따라 적어도 그 특약에 위배한 부분인 위 할인어음 중 미회수잔액에 해당하는 23,205,750원 및 그 종속채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2차 보증서에 기한 책임은 면제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일부 면책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처분문서인 위 2차 보증서상의 명백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위 보증서상 특약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위 할인어음 4매 모두를 회수하는 것을 이 사건 2차 보증의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들어 원고가 특약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처분문서의 문언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해석을 그르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